



# 한국산업기술시험원



수신 수신자 참조  
(경유)

제목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한 조치요청 회신

1.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-352(2024.03.06.)호 관련입니다.
2. 전기용품 안전성 조사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(안전인증의 취소 등) 및 제20조(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), 제27조(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) 및 우리 원 안전인증 업무절차서 제5조 제6항(인증의 유지 및 취소 등) 의거 불임과 같이 행정처분 조치 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**불 임** : 안전성조사 결과 행정조치 현황 1부. 끝.

##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



수신자 국가기술표준원장(전기통신제품안전과장), 국가기술표준원장(제품시장관리과장), 국가기술표준원장(제품안전정보과장),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,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,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, 관세청장, 서울특별시장, 경기도지사, 고양시장, 부천시장

팀원	<b>홍봉석</b>	센터장	2024. 4. 8.
			<b>박정호</b>
협조자			
시행	인용2120-00689	(2024. 4. 8.)	접수 녹색에너지과-8892 (2024. 4. 8.)
우	08389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0(충무공동)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인증융합센터	/ http://www.ktl.re.kr
전화	055-791-3401	/전송 055-791-3329	/ hongbs@ktl.re.kr / 대국민 공개